#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19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김재섭·송언석·인요한

김기웅 • 배준영 • 주호영

유용원 · 김장겸 · 김상훈

최보유 · 최은석 의원

(11인)

##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

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가.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 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 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 조제1항 신설).
- 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 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 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 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③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는 제1항제 2호의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만을 인 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혅 행 개 아 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 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 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 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 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 한다) 및 제178조 · 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 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 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 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응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

② ~ ⑩ (생 략) 제166조(장외거래) <u><신 설></u>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 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 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 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 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 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 <u>②</u> (연행 세폭 외의 무문과 실음)
- ③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 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는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만을 인가 받은 투자중개 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
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